

[대한체육회]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가이드

□ 안내목적

- 입사지원서 **【경력사항】** 작성 안내를 통해 작성오류 및 착오기재 방지를 위함.
 - ‘경력’의 사전적인 정의 또는 타 기관 등의 구분 방식과 관계없이,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요청

□ [필수 유의사항]

- 반드시 하단의 **경력사항** 기준에 맞추어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(미준수 시,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)
 -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경력사항은 반드시 **증빙이 가능해야하며, 증빙이 가능한(가능할) 항목에 한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**
 - 경력증명서·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발급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, 미리 발급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(제출기한 내 제출 필요)
 - 증빙이 불가능하거나, 불충분할 경우 ▲서류전형 점수 재산정(서류전형 불합격으로 변동 → 면접전형 응시 불가 가능), ▲최종 합격 취소, ▲기타 불이익 등이 주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,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함에 대해 추후 양해를 구하는 행위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.
- **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입력하는 경우, 출신여부와는 무관하게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 - ※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 산학협력단, 대학 의료원 일체
 - 예시1: 한국대학교 의료원에서의 경력 입력 → ○○대학교 의료원으로 기재
 - 예시2: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의 경력 입력 → ○○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
 - 예시3: 한국초등학교 행정실에서의 경력 입력 → ○○초등학교 행정실로 기재

□ 경력사항: 서류전형 배점획득 가능

- (인정기준) 하단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(○로 체크되어 있는)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 * 하단 표 필독

- 1) 근로계약을 체결함.(교육연계 체험실습 계약서 등 불인정)
- 2) 주 5일제(40시간 이상) 근무함.
- 3) 단일 경력 기준, 연속해서 90일 이상 근무
- 4) 상근으로 근무함.
- 5) 보수를 지급 받음.

※ 단, 모두 ○로 체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내 능력단위와 관련된 직무 경력으로 불인정 될 경우 모두 ○로 체크되어 있다고 해도 배점으로 인정 불가

채용 분야	전문기술직 7급 (사격장관리)	전문기술직 7급(사격장관리) 외 전체 채용분야 (일반직, 전문기술직, 공무원)
작성 기준	직무 특성을 고려하여, 선수경력에 한해 '주 5일제(40시간 이상)' 및 '상근근무'의 경우, X일 경우에도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단위로 인정될 경우 배점부여 가능	하단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(○로 체크되어 있는) 경우에 한해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단위로 인정될 경우 배점부여 가능 배점으로 인정 가능

- (증빙자료 제출) 면접전형 대상자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함.(4대보험 관련 자격득실확인서 불인정)
 - 현재 재직 중인 경력: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, 반드시 채용공고 기간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함.(2026년 3월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, 2026년 4월 ~ 2026년 6월까지의 재직여부 확인 불가)
 - * 채용공고 기간 전에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, 해당 일을 기준으로(근무 종료일로 간주) 서류전형 경력배점 재산정
 - **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입사일과 발급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.
 - 근무종료 된 경력: 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 (2025년 11월 30일까지근무한 경력에 대해 2025년 10월 2일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, 2025년 10월 3일 ~ 11월 30일까지의 재직여부 확인 불가)
 - *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입사일과 퇴사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.

- 최종 합격자: ▲ 근로계약 체결, ▲ 주5일제(40시간 이상), ▲ 상근으로 근무, ▲ 보수를 지급받음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증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으며,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○ 일반직 7급(사무) 경력배점 인정 관련, 하단의 표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 시, 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- 예시: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 하는 경우, 소속기관명은 <국민체육진흥공단>이라고 기입해야 함.

관련근거	인정범위	
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	가목	대한체육회, 시도체육회, 시군구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도장애인체육회, 시군구장애인체육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도핑방지위원회
	나목	한국프로골프협회(KPGA),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(KLPGA), 한국농구연맹(KBL), 한국여자농구연맹(WKBL), 한국프로축구연맹(K League), 한국야구위원회(KBO), 한국배구연맹(KOVO), *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, *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*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경우, 채용공고일('26. 8. 5.) 기준 회원종목단체 또는 가맹단체인 경우에 한함.
	다목	국기원, 태권도진흥재단
②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제9호 아목에 해당하는 단체 중, 본 표에 포함된 단체	공공기관 ※ 「공공기관운영법」	스포츠윤리센터, 한국스포츠레저, 한국체육산업개발
	공직유관단체 ※ 「공직자윤리법」	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, 한국프로스포츠협회, 스페셜올림픽코리아, 2018평창기념재단,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, 양구군스포츠재단
③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제9호 사목에 해당하는 대회조직위원회 중,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 ※ 해외개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: 미해당	국제올림픽위원회·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*올림픽(패럴림픽)대회, * 청소년올림픽대회 포함 아시아올림픽평의회·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(패럴림픽)경기대회,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,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,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,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,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,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,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,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* ①~②에 해당하는 단체 소속으로 ③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우 해당기간 근무일수는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.(1개단체 근무경력 기간만 합산)	

※ [전체 채용분야 공통] 기간이 중복되는 경력을 복수로 입력한 경우, 중복되는 기간(일수)은 합산에서 제외됨.

※ [전체 채용분야 공통] 개별 경력 당 인정되는 직무기술서 내 능력단위는 1개로 제한됨.

- 예시: 동일한 경력을 여러 개의 능력단위로 중복 기재 시, 배점을 복수로 부여하지 않음.
- 연속해서 근무한 경력은 1개의 경력으로 기재(기간별로 나누어서 복수로 기재 X)

※ [전문기술직 7급_사격장관리]

- 직무 특성을 고려, 선수경력에 한해 '주 5일제(40시간 이상)' 및 '상근근무'의 경우 X일 경우에도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단위로 인정될 경우 배점부여 가능

※ [전문기술직 7급_사격장관리·간호사·물리치료사(보훈 포함)·영양사, 공무원(트레이너)]

- 직무 특성을 고려, 직무기술서 상의 사무행정 능력단위(01.문서작성 05.사무행정 업무관리 07.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)에 해당하는 경력을 복수로 기재했을 경우, 1개의 경력만 배점 부여
- *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단위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,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되는 1개의 경력만 배점 부여

※ [전문기술직 7급_간호사·물리치료사(보훈 포함)·영양사, 공무원(트레이너)]

- 간호사: 직무기술서 상의 간호제공·간호지원의 세부 능력단위들의 경우, 간호사 면허증 취득 이후의 근무일수만 인정
- * 예시: (간호제공) 01.간호기록
- 물리치료사(보훈 포함): 직무기술서 상의 물리치료·의무지원의 세부 능력단위들의 경우,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이후의 근무일수만 인정
- * 예시: (의무지원) 01.물리치료
- 영양사: 직무기술서 상의 지역사회위생관리·외식운영관리의 세부 능력단위들의 경우, 영양사 면허증 취득 이후의 근무일수만 인정
- * 예시: (외식운영관리) 02.식자재관리

- **트레이너:** 직무기술서 상의 선수스포츠지도 세부 능력단위들의 경우, 체육지도자(문화체육관광부) 자격증 취득 이후의 근무일수만 인정

* 예시: (선수스포츠지도) 14.선수체력평가

※ (공통) 직무기술서 상의 능력단위로 인정될 경우에 한함.(면허증·자격증 취득 전 근무일수는 합산에서 제외)

* 예시: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('25.2.20.) / ○○병원 물리치료사 근무 시작일('25.2.18.)일 경우, '25.2.18.~2.19. 기간은 배점산정 시 제외함.